

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 29호, 2004. 8. 4)

총 무 위 원 회

2004. 9. 17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8. 4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8. 17 :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4. 9. 14 : 제89회 사천시의회의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(회계과장 장석기)

가. 변경 이유

○ 2004년도에 취득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수립,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코자 함

나. 주요 내용

○ 취득 계상 재산

(단위 : m², 천원)

구 분		건수	수 량	금 액	담당부서	비고
계		건물 1	17,704	31,300,000		
취 득 (신축)	사천시 신청사 건립	건물 1	17,704 (5,355평)	31,300,000	행정타운 사업소	

3. 관계 법령

○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

4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○ 본 변경계획안은 사천시 용현면 덕곡리 424-2번지 일원에 연건평 5,355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물취득의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※ 신청사 건립부지취득을 위한 관리변경 계획안은 2003. 3. 21 시의회의 의결을 득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 음